

# 제65조 물 납



## 제65조의 요약

-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1,000만원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공공용 지보상채권으로 납부가능
- 물납신청일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10일전
- 승인통지일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수납가격을 평가하여 통지

## ● 제65조

### 【물 납】

- ①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I. 법인세물납의 개요 (법 제65조)

법인의 자금사정이 나쁘거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여 법인세를 현금 납부하는 대신 토지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공공용지손실보상관련 토지양도나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해 금전납부가 곤란하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가능액은 공공시설시행자에 대한 토지양도소득세나 토지수용 관련하여 계산되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II. 법인세의 물납제도 (법 제65조)

### 1. 법인세물납의 개념과 방법론 (법 제65조제1항)

#### 1) 물납의 의의

##### ① 토지양도시 법인세 부담과 자금부담

법인세 납부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현금 등 금전납부가 곤란한 경우 토지 매각관련 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세법은 법인이 비업무용이나 저수익성 혹은 투기성부동산이나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처분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팔 때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토지처분이 원활하지 못하다. 토지수용·양도대금은 일반적으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결국 법인은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이 금전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할세무서 승인을 얻으면 한국토지공사 등이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 ② 토지에 부수된 정착물의 포함

토지정착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토지의 정착물 부분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 2) 물납의 수단과 범위

법인세의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에 한하고 당해 법인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에 한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02조 【물 납】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2. 법인세물납의 절차 (법 제65조제2항)

### 1) 법인세물납의 요건 및 물납안도

#### ① 물납승인요건 규정

법인이 법인세물납을 하려면 관할세무서로부터 물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물납의 승인요건은 i) 토지 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ii)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상당액이 물납가능한 세액의 한도액이 된다.

물납의 승인요건 및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02조 【물 납】

③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

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② 물납대상법인세의 범위

법인세물납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분에 한하는데 여기서 법인세액에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이밖에 차감납부할 세액이나 신고납부세액을 의미하는지, 산출세액 등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지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모두 공제한 세액이 아니고 공제감면세액만을 공제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총부담법인세액으로 해석된다.

## 2) 법인세물납 신청 및 승인

### (1) 과세표준신고기한 10일전까지 물납승인 신청 및 결정통지

법인세의 물납승인신청은 법인세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결정여부와 상황을 물납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도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02조 【물 납】

- ④ 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세입·통화조절시 물납승인 배제

세입상황이나 통화조절목적상 물납신청 있더라도 불가능할 수 있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02조 【물 납】

- ⑥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 (2) 물납승인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법인세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통지】

- ① 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3. 26 제목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 ▲ 시행규칙 제82조 【서 식】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의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2002. 3. 30 개정)

### 3) 물납용 토지개발채권 등의 평가

#### ①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을 적용함

물납에 충당할 공공용지보상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02조 【물 납】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총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② 평균시가 및 장부상 계상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010. 2. 18 개정)

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8. 2. 29 개정)

상기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보상채권의 수납가액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는 물납신청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과 신청전일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된 경우는 발행가액에 신청일까지의 미수이자를 합계한 금액으로 평가한다.